

인천지방법원 2022. 3. 29 선고 2021나505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3. 29 선고 2021나5055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2333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이창선, 박민주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김성규

변론종결 2022. 3. 8.

판결선고 2022. 3. 2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233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19. 7. 2. 체결된 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9,541,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9,5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의 “B”을 “피고의 처인 B”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들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은 D 명의의 부동산인 인천 서구 J아파트 K호(이하 ‘J 아파트’라 한다) 처분대금이다. D이 2013년경 J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나이, D, 피고 및 B의 관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당시 B이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J 아파트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D 명의로 J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고, 그에 따라 J 아파트 처분대금은 명의신탁자인 B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금임에도 피고에게 지급되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J 아파트 처분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B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인 J 아파트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나.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D이 J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B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B의 아들인 D(L생)이 24세이던 2013. 3. 22. J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2년경부터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2013. 2.경 조부인 E(피고의 아버지이다)로부터 증여받은 1,450만 원과 자신의 보유자금을 합하여 J 아파트에 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2013. 3. 22. J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8,9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 등을 납부한 후 그 대출원리금을 직접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이 위 J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김은경, 판사 권비룡